

##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27/32. 인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인권이사회는,

세계인권선언에 담겨있으며, 그에 따라 다른 인권문서, 예컨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기타 관련 주요 인권문서들을 통해 구체화된, 인권의 보편성, 상호의존성, 불가분성, 상호연관성을 상기하며,

또한 세계인권선언에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것과,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이나 사회적 소속, 재산, 출생 혹은 다른 신분과 같은 어떤 종류의 구분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확인한 것을 상기하며,

나아가, 비엔나 선언과 실행계획에서 모든 인권은 보편적이며, 불가분하고, 상호의존적이며, 상호 연관되었으며, 국제 사회가 인권을 전 세계적으로 공정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대등하게 역점을 두어 다뤄야하며, 국가적, 지역적 특성의 중요성 및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유념하는 동시에,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구조와는 무관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해야함은 국가들의 의무임을 확인한 것을 상기하며,

2006년 3월 15일자 유엔총회 결의안 60/251에서, 모든 인권과 모두의 기본적 자유 보장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공정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보편적으로 존중되도록 만들 책임이 인권이사회에 있다고 명시한 것을 상기하며,

또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그로 인해 행해지는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것과 관련한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의 모든 결의안, 특히 2011년 6월 17일자 인권위원회 결의안 17/19를 상기하며,

세계 곳곳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개인에게 가해지고 있는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행위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과 차별에 맞서는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차원의 긍정적인 발전을 환영하며,

또한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이나 사회적 소속, 재산, 출생 혹은 다른 신분에 근거한 폭력과 차별에 맞서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의 노력을 환영하며,

1. “차별적인 법과 관례 및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근거하여 개인에 행해지는 폭력 행위”(A/HRC/19/41)라는 제목의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보고서와 제19차 인권이사회 회기에서 열린 패널 토론에 감사하며 주목한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번역

2. 현존하는 국제 인권법과 기준을 적용하여 폭력과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과 방법을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한 보고서(A/HRC/19/41)를 갱신하며, 이를 제29차 인권이사회 회기에 제출할 것을 인권고등판무관에게 요청한다,

3. 인권이사회는 계속해서 이 안건에 우선순위를 두고 검토하기로 결정한다.

42차 회의

2014년 9월 26일